

의안 번호	1530	【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3. 26.(화)

### 2. 제안이유

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·시행,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다. 지원센터 설치, 공유단체 또는 기업의 지정 등(안 제7조~안 제8조)
- 라. 보조금 등 지원, 공공시설 사용, 교육 및 홍보(안 제9조~안 제12조)
- 마.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, 포상(안 제13조~안 제17조)

### 4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4호

## 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4호에 근거 하여
- 공유경제를 통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 나눔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있음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타.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

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